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는 이미 파산선고가 되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 권을 잃고 집행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감수하는 소극적인 지위밖에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성립되는 “파산재단”과 채무자의 사망에 의하여 생기는 “상속재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자의 신득재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재단의 범위가 문제된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고정된 파산재단이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사망 시까지 발생한 신득재산 등은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만일 신득재산의 총액보다 파산선고 후 상속개시 전에 생긴 상속채권의 총액이 큰 경우에 제2의 파산이 문제된다.⁷¹⁾

(4) 면책신청사건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중에 사망한 때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신청대리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책신청사건에 대한 종국결과를 “○○○○. ○○. ○○.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로 처리한다.

라.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조치

(1)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기록과 한정상속인 등 신청인⁷²⁾과 면담을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그 소유의 등기·등록 재산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법원에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

71) 伊藤 眞 外 5, 条解 破産法, 弘文堂(2010), 1494, 1495면

7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299조 제1항).

청'[서식 6]을 한다(법 제24조 제3항). 이때 파산관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상태로 파산 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을 하면 된다.⁷³⁾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300조 후문), 경우에 따라서는 한정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선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⁷⁴⁾

(2) 집행 외관의 제거

상속재산파산은 개인파산사건에 비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이를 환가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외관을 없애는 절차가 필요하다. 파산관재인은 집행법원에 파산선고결정 등본과 파산채권자목록의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및 해제신청'[서식 13]을 하여야 하며, 만일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식 12]을 할 수 있는 점은 개인파산사건과 동일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소액의 예금과 보험환급금만 존재하고 그 합계액이 신

73) 상속재산파산절차 중에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망인 명의의 상태에서 신청한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7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1호).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2023.01.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및 예납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예금 등을 환가한다 하더라도 환가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은 법 제473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재단채권으로 해석되는 인지·송달료 및 예납금⁷⁵⁾을 납부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환가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요 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되(법 제38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이 주로 파산재단을 형성한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실제 환가가능성이나 환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포기하는 것 등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파산재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 중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 어떤 것 인지를 면밀히 살펴 환가절차에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환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주요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등 등기(등록)되는 권리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이 파산선고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공시되어 있었다면 파산재단이 된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공유상태를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의자에 불구하고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또한 한정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도 한정승인이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300조 후문)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중 등기(등록)된 권리가 있으면 법원에 파산선고기입등기의 촉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75)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 299면. 상속인 등이 납부한 예납금과 인지·송달료는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제1, 2호).

또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유형, 즉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명의신탁의 유형 및 효과를 검토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채권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 예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⁷⁶⁾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에 부수한 담보권이나 용익물권 등도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못 하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모두 상속재산이 되므로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한편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를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806조 제3항),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청구권자가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민법 제825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⁷⁷⁾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민법 제897조), 재판상 파양(민법 제908조)의 경우에도 민법 제806조가 준용된다.

(3) 생명보험금청구권

생명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당연히 피상속인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된다. 그 이외의

76) 다만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 또는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금지범위 내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3조). 한편 후술하듯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7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경우에는 아래 표⁷⁸⁾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보험증권, 계약서, 약관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상 지위가 상속재산이 되므로,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순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여부	파산재단 여부	참고 판례
1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	○	2000다64502
2	피상속인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	×	2001다65755
			'상속인'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	×	2000다31502
			지정 안함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	×	2003다29463
3	피상속인	제3자	피상속인	제3자 사망으로 발생	×	2005두5529

(4) 유족급여

공무원이나 사기업의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법률이나 사기업의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크게 미지급 임금의 성격과 유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일종의 사망퇴직금으로서의 유족급여와 오로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로 나눌 수 있다.

사망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유족급여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수급권자가 고유의 재산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⁷⁹⁾ 상속재산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78) 개인파산 · 회생실무(제6판), 291면.

7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

로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사회보장법에서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유족에게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유족급여는 오로지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목적에서 법률에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급권자로 정해진 유족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유족급여와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그 급여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5) 이른바 대상재산(상속재산이 처분, 멸실·훼손된 경우의 반대급부 또는 대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경우,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된 재산의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른바 대상재산)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지 문제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390조 제1항).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법 제390조 제2항). 상속인이 반대급부를 받을 당시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반대급부로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면 상속인에게 가혹하므로 현존이익을 파산재단에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수용,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멸실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대가에 해당하는 보험금, 보상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상재산이 파산재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⁰⁾

나아가 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

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80)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은 대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이외에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가된 금전을 파산재단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부의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 2998 판결)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7)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법 제389조 제2항).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존재한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면 상속인은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간의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동일한 취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법 제389조 제2항).

바. 부인권

(1) 상속재산파산사건의 특징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요청에 대체로 성실히 응하고 있으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법원에 대비하여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게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고(법 제321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58조).

(2)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

법은 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00조).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라고 해석되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달리 채무자(상속재산) 자신이 파산재단 귀속 재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개시 전후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400조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는 상속개시 전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후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이다.

(3) 준용규정

법 제400조는 부인의 개별적 성립요건을 정한 법 제39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을 정한 법 제392조, 어음지급의 예외를 정한 법 제393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법 제398조 및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의 부활에 관한 법 제399조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에 준용한다. 그러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법 제394조), 집행행위의 부인(법 제395조)의 준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4)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법 제401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는 상속채권자보다 열후하

기 때문에 수유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수유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파산채권자, 즉 상속채권자를 해하는 때는 이러한 우선권자를 해한다는 것만으로 그 외의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수유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부인은 수유자의 주관적 요건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행위의 부인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

(5)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법 제402조).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자에 관하여 보면 잔여재산을 파산채권자인 수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수유자보다도 부인의 상대방을 보호한 것이다.

사. 재단채권

(1) 재단채권의 종류

법 제47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단채권과 각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단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위 재단채권 외에도 상속개시 이후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청산에 관한 비용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은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2) 실무상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청구권

(가)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상속재산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재산파산신청 시 납부한 인지·송달료는 상속재산파산절차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공익적 비용이므로 법 제473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의 공동

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와는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들이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 등에 관한 공고비용 및 채권신고 최고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점에 비추어 상속인 등이 납부한 인지·송달료도 법 제473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재단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인 등이 인지·송달료를 상속재산에서 출연한 경우나 피상속인이 인지·송달료를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실무상 채권자가 신청한 법인파산 사건이나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절차 수행에 있어 불가결한 공익적 비용이므로 법 제473조 제1호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으로 본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도 상속인 등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신청에서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상의 비용으로 파산절차 수행에 있어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법 제473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예납금을 상속재산에서 출연한 경우나 피상속인이 예납금을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장례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의 묘지구입비 역시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천도재, 49일재, 위패비용, 제사비용은 장례비의 일부라거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6.자 2015브360, 361 결정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 8. 30.

자 2016스549 결정(재항고 기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장례비용을 지출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지출한 비용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우선 지급받지 못하면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와 균형이 맞지 않아,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보다 불리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할 유인이 줄게 됨은 물론, 상속인의 청산의무를 경감시키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파산재단의 관리에 관한 비용(법 제473조 제3호) 혹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현실적으로 사무를 넘겨받기 전에 상속인이 긴급처리로 인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일종의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473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되,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¹⁾

파산재단 총액	산정방식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3)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의 변제방법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

81) 신청인이 부의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 파산재단에 편입된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이 부의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파산채권자의 수와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장례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파산절차에서도 법 제477조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실무상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제1호)”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제3호)”은 공익비용으로서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 제473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예납금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된 것이므로 법 제473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재단채권, 즉 파산관재인의 보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환가비용 등의 청구권보다는 열후하다고 볼 것이다.

피상속인의 장례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법 제473조 제3호(파산재단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꾀하면서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재산의 중국적 청산을 도모하는 절차인 점, 장례비용의 부담자는 기본적으로 상주인 점, 장례비용은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모두 부의금에서 충당되는 점⁸²⁾, 장례비용은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으로 볼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상속인이 긴급처리로 인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일종의 법 제6호(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장례비용은 법 제473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 재단채권 및 동순위의 다른 특별재단채권⁸³⁾과 안분변제를 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 할 수 있다.

8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노합86, 87 심판).

83) 서울회생법원은 “특별규정에 따른 특별재단채권이 법 제473조 각 호가 규정한 일반재단채권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특별재단채권과 일반재단채권 또는 다른 특별재단채권 사이의 변제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재단채권을 법 제47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단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변제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법인파산실무(제5판), 391면].

아.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1) 실무상 문제점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에 관한 법 제 383조 제1항 및 제2항이 상속재산파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압류금지재산제도가 면제재산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사건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최소한의 생계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종종 신청인 측에서 상속재산파산사건에도 압류금지재산제도와 면제재산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견해의 대립

(가)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

상속재산파산사건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개인인 채무자의 생계보장, 재기지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압류금지재산제도가 법 제383조 제2항에서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제도는 상속재산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 대한 포괄승계를 동결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청산하는 절차이고, 법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89조 제1항), 그리고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최저생활의 보장이나 새출발은 관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고 한다.

(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민사집행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정하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196조의 압류금지물건의 경우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압류금지물건 인정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압류금지물건

에 대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점유 및 사용가능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한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나 최소한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상속인 가족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받았던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는 압류금지재산이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한 피부양자나 친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경우이거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피부양자 등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제도의 적용을 긍정하여 상속재산파산사건의 경우에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압류금지재산 등이 피상속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소명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의 적용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고,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

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서울회생법원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보되,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나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자력이 없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3조).

자. 상속재산파산과 조세

(1) 실무상 문제점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도 향유하지 못하는 상속인으로서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신고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아닌 상속포기로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선고 후인 경우에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9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매각,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및 파산관재인의 속행신청으로 계속된 강제경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초과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⁸⁴⁾

그런데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무이다.⁸⁵⁾ 이 경우에 추가 쟁점으로 파산선고 후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위 양도소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 경매대금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일반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⁸⁶⁾

84)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속비용성을 부인하였으나(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위 판결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처분을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위 법리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85)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고[부동산거래관리과-107(2012.2.15.)],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2019.02.18.)]. 조세심판원 2020. 9. 16.자 2020광1212 결정은 청구인의 부과세 주장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556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91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된 것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6) 이주영, 「파산선고 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고-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5호(통권 제755호), 법조협회 2022. 10. 28., 304, 305면. 한편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5274

(4) 취득세

(가) 실무상 문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취득”의 정의에 상속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개입할 여지없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상의 사망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사건과 달리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경매를 개시하고, 이후 당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 또한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매각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다. 즉,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환가실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등기 등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처분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있다.

상속인은 자신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관리처분권도 없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 해석론상 한정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득세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즉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만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 되기 때문이다.

판결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 제473조 제2호 단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이라고 본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의 항소심도 결론을 같이하여 2024. 2. 7. 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호), 상고심인 대법원 또한 2024. 6.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두36906호).

(나)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상속재산의 개별적 권리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동산증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지 등과 상관없이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⁸⁷⁾ 이 견해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⁸⁸⁾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단채권성을 부정한다.

2) 긍정설

이 견해는 ㉠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한정상속인의 의사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인 점,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경매절차의 준비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⁸⁹⁾(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

87)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 297, 298면.

88)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정승인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89) 강제경매 사안에서도 상속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한 다음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집

201197 판결), 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채무로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양도소득의 경우는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들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취득세는 단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인 점, ㉕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법 제473조 제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㉖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해 처분재산에 관한 취득세는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소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속재산파산절차 중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고, 적어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해 처분재산에 관한 취득세는 관리·환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충실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판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평·타당한 결론을

행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0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 보고

가. 면책제도의 의의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법은 제8장 제1절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적 면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나. 면책불허가사유조사에 있어 유의할 점

파산·면책제도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숨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법 제564조 제1항에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개별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4. 4. 13.자2004마86 결정은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⁹⁰⁾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를 넓게 해석한다면 이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부여라는 면책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당 부분의 면책불

90) 구 파산법 제346조는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나, 현행법 제564조 제1항은 위 규정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허가사유가 형사처벌이 되는 파산범죄사유와 겹치는 점도 면책불허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불확정개념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엄격성을 유지하여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개정의 취지 및 법정책적인 측면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각 면책불허가사유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엄격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파산범죄(제1호), 사기 신용거래(제2호), 허위 재산신고(제3호), 면책부적격(제4호), 법정의무위반(제5호), 사행 행위(제6호) 등이 있는데 크게 보면 파산범죄행위와 파산범죄 이외의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항을 바꾸어 차례로 살펴본다.

라.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에게 법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행위), 제656조(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제658조(설명의무위반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구성요건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1)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공통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면책허가결정을 한 후 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569조 제1항).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1) 본 호의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⁹¹⁾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퇴직금청구권 등),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⁹²⁾이 포함되고, 압류금지채권은 제외된다.

2) 재산의 장소적 이동⁹³⁾은 물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⁹⁴⁾도 은닉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

91) 지급불능에 빠진 이후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 송금내역이 발견된 사안에서 그 금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9.자 2008라344 결정.

92) 부인권은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10년 전에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3) 채무자가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압류물품(시가 199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로 채권자로부터 공소를 당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무단이전행위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후 사안이 경미한 점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면책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자 2013라705 결정).

94) 대법원 2006. 5. 15.자 2004마755 결정.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요양급여 등을 다시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6.자 2009라998 결정. 친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자 2007라802 결정. 채무자가 미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장모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고 파산신청 6개월 전 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파산신청 후 장모 명의로 다른 승용차를 구입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자 2007라397 결정.

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호의 은닉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의미의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도 포함한다. 상속등기 전 상속재산의 단순 불이재만으로는 은닉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편파변제 즉,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자 2010마1551, 2010마1552 결정).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더 나아가 이 규정이 정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또는 불행사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할 경우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 장차 부인권 행사를 통해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 포기행위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4)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5)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허위 양도하는 경우에 고의·목적은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인정은 어려울 것이나, ①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② 시가보다 낮게 양도되거나, ③ 재산양도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의 정황증거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

6)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사실상의 견련관계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제2호)

본 호의 행위는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과 채무자가 제3자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그 제3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⁹⁵⁾

95) 채무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제3자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가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행위의 시기, 고의와 목적, 인과관계는 위 (가)항과 같다.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불실 기재·은닉·손괴행위(제3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업장부 작성·보존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 호를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파산죄 부분에서 후술한다.

(라) 폐쇄장부의 변경·은닉·손괴행위(제4호)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법 제481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파산사건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장부를 폐쇄할 필요가 있는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를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1조)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와 달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행위(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상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본 호에 해당할 수 있다.⁹⁶⁾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까지 한 사안에서 이를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아 면책을 불허한 사례로는 서울회생법원 2017. 12. 14.자 2016라2171 결정(확정).

96)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곧바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고,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7,9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여 다른 채무의 변제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부산지방법원 2011. 7. 14.자 2010라842 결정(확정).

(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제2호)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비본지행위(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원인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본지변제(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이상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1) 물적 담보 이외에 연대보증과 같이 단순한 인적 보증의 제공행위도 담보의 제공에 포함한다.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는 주로 변제⁹⁷⁾, 공탁, 상계, 대물변제, 경개, 해제계약, 상계계약이 문제된다. 실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매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본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3)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한다.

4) 본 호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한다.⁹⁸⁾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불실 기재·은닉·손괴행위(제3호)

97)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합계 430만 원 상당)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자 2011라400 결정(확정).

98)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채무자가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상인은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다만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고(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 소정의 행위에 해당할 뿐 본 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상업장부 작성·보존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상업장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이 규정이 법제도상 상업장부 작성·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규정이므로 파산관재인은 개인기업을 경영한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 상업장부의 제출을 촉구하고, 만약 장부제출을 하지 않거나 불실기재가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폐쇄장부의 변경·은닉·손괴행위(제4호)

본 호는 사기파산죄에서의 법 제650조 제4호와 행위 내용이 같다.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우이다.

(3) 구인불응행위(법 제653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을 구인할 수 있다(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제578조의6).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된다.

(4)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656조)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파산증퇴죄로 처벌되고, 이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⁹⁹⁾

(5) 설명의무위반행위(법 제658조)

이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단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이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¹⁰⁰⁾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성립한다. 채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¹⁰¹⁾ 설명의무위반이 경미하다면 재량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법 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

99)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재산상태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금액 미상의 돈을 공여하려 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자 2012라1055 결정(확정).

100) 설명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관하여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101) 예컨대,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그 명의자인 가족이 재산취득 당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거나 그 취득시점 이전에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등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야 한다.

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

본 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 의견조회를 참조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을 것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을 말한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 것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를 속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¹⁰²⁾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의 차용을 계속하는 행위가 흔히 발견된다.

(라)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할 것

신용거래란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대방이 위 오신의 결과 신용거래에 응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것을 요한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채무자의 행위, 상대방의 오신, 신용거래, 재산의 취득 사이에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속칭 ‘카드깡’이 이 규정이 정하는 신용거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하급심 결정례들은 속칭 ‘카드깡’ 행위(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구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로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¹⁰³⁾ 현행법 제651조 제1항 제1호는 구 파산법 제367조 제2호의 문언 중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속칭 ‘카드깡’은 실제 물품구입이 없는 단순한 자금유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102) 임차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파산선고 전에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행위로 인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자 2011라953 결정(확정).

103) 실제 물품 구입 없이 1,04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36만 원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4.자 2010라258 결정(확정).

에서 현행법하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불이익처분’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그 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가) 채무자는 면책의 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할 의무가 있고(법 제556조 제6항),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 진술서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도 본 호에 해당한다.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0.자 2009마78 결정).¹⁰⁴⁾

(나) 본 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선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다)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그 원인, 별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가 본 호에 해당한다.

104) 다만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여러 정황상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가 그 재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파산관재인이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라) ‘진술’이란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심문기일에서의 구두진술뿐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의한 진술을 포함하고, 진술의 대상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그 조성경위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의미한다.

(마) 법 제566조 제7호가 비면책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본 호에서 말하는 면책불허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3)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다만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면책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채무자가 노령이거나 생활보호·장애연금 등의 공적 부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전 파산 및 면책사건의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목록 누락 재도의 파산신청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 범위는 이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종전 면책허가결정 이후 시점으로 조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불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시적 범위의 제한 없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4)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가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본 호는 보충적 규정이다.¹⁰⁵⁾ 법에서

105) 최근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갹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② 채무자는 면책신청절차 및 그 전제로서 행해진 파산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 성실하게 사실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재산상태 이외의 부분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③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¹⁰⁶⁾ 등이 있다.

(5)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 구 파산법이 적용되던 때와는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의 정도가 과다할 것을 요구하여 구 파산법에 비해 그 사유를 더욱 엄격히 하였다. ‘낭비’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것을 말하며, ‘그 밖의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면책불허가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¹⁰⁷⁾

바. 재량면책

법 제564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에게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하고 있는 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106)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처분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로 개인채권자 2인에게 채무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이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채권자 2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항고심 심문기일에도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5.자 2012라521 결정(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107)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에 다액(1억 3,300여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대부분이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서울회생법원 2019. 12. 4.자 2018라182 결정(확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량면책).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고려요소를 조사, 정리하여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문제된다.

재량면책 여부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에 유념하여 채권자들의 손실이 어떤 경위로든 전보되었는지 여부, 면책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이익 정도, 면책불허가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관여 정도, 파산·면책 신청시점과 면책불허가사유의 발생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 또한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환가를 통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채무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는지 여부도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

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파산관재인은 선임 즉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부담의 경위, 자산의 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법에 규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아.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는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결과와 아울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도 기재하게 된다. 신양식에는 면책허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

는 난이 마련되어 있고, 이의채권자와 이의의 요지를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파산관재인의 면책 허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2) 면책허부에 대한 조사보고는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의 해당 기재란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2회 이후의 집회보고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면책허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허부에 대한 추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집회기일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부

파산관재인 보고서 e-Form 작성 안내

1. 개요
2. 보고서 작성화면의 기본 구성
3. 소송서류 입력과 보고서 제출

1 개요

2017. 11.부터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e-Form(전자양식)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통일화 되었고, 보고서 작성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법원은 e-Form에 의하여 축적된 파산시기와 원인, 채무자의 나이, 직업, 월수입과 재산, 파산채권의 액수와 채권자수, 면책불허가사유 등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관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파산관재인’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나의전자소송’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하부 항목 중 ‘보고서 관리’의 아래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눌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2 보고서 작성화면의 기본 구성

법 원	테스트테스트법원1	사건번호	2014하단1000040 (2014하면 1000040)
재 판 부	제1파산단독	사 건 명	파산선고
신 청 인	팩철형	채 무 자	팩철형 (890904-1)

1.파산관재인 보고서
2.자료제출 체크리스트
3.업무수행일지

신청대리인 정보

신청대리인
☐ 있음
☒ 없음

신청대리인 명

예정기일
2017.11.21

기일시간
3333 (예시 : 16:00)

★ 기일명
제1회 채권자집회

(예시 :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 기본정보

보고서 초기화

파산선고 전후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다. ‘보고서관리’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신청인, 채무자 등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다.

사건의 기본 정보의 아래에 있는 상단 메뉴는 「1. 파산관재인 보고서», 「2. 자료제출 체크리스트」와 「3. 업무수행일지」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 파산관재인 보고서

(1) 신청대리인 정보

1.파산관재인 보고서		2.자료제출 체크리스트		3.업무수행일지	
신청대리인 정보 * 필수입력사항					
신청대리인	☐ 있음 ☒ 없음		신청대리인 명		
예정기일	2017.11.21		기일시간	3333 (예시 : 16:00)	
* 기일명	제1회 채권자집회		(예시 : 제1회 채권자집회)		

신청대리인 유무와 신청대리인의 이름, 채권자집회의 예정기일과 시간을 입력한다.

(2) 보고서 기본정보

보고서 기본정보		보고서 초기화
* 보고서 차수	1차 ☐ 수정 제출	
파산절차	☒ 폐지 신청 ☐ 종결 신청 ☐ 속행 신청 ☐ 채권조사기일 신청 ☐ 고가물보관 신청	
속행희망기일	선택 ☐ 년 1 ☐ 월	
한가포기신청	☐ 부동산 ☒ 동산 ☐ 기타	
면책절차	☐ 면책의견 ☒ 재량면책 ☐ 면책불허 ☐ 면책기각 ☐ 의견보류	
불허사유	☐ 법 제650조 위반 ☒ 법 제651조 위반 ☐ 법 제653조 위반 ☐ 법 제656조 위반 ☐ 법 제658조 위반 ☐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 채권자 이익	☒ 있음 ☐ 없음	
이익자	이익자 : 2 명 (17 / 4000 Bytes) 국민은행 신한은행	
저장		

□ 보고서 차수, 파산 및 면책절차에 관한 관재인 의견, 채권자 이의 유무 등 보고서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입력항목 앞에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보고서 기본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보고서의 다른 내용을 저장할 수 없다.

□ 파산절차에 관하여 ‘폐지 신청’, ‘종결 신청’, ‘속행 신청’, ‘채권조사기일 신청’ 체크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가물보관 신청’은 위 체크항목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실무상 고가물보관 신청은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가물보관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 ‘부동산’, ‘동산’과 ‘기타’의 체크항목(중복 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환가포기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면책의견’, ‘재량면책’, ‘면책불허’, ‘면책기각’, ‘의견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책절차에 관한 관재인의 의견을 입력할 수 있고, ‘면책불허’ 의견의 경우 그 아래 ‘불허사유’의 체크항목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체크한다.

□ 이의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 이의’ 항목에 ‘있음’을 선택하고 이의채권자의 수를 입력하면 보고서 하단의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란에 이의채권자가 표시되며, 이의사유와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제1회 보고서 제출 이후 수정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차수’ 항목에 있는 ‘수정 제출’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수정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제출내역 전체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가장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불러올 수도 있다.

(3) 최근주거이력

최근주거이력		최근주거이력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연도	주거지 주소	거주형태	거주형태상세	삭제	순서변경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주거이력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연도	[] ~ []						
* 주거지 주소	우편번호찾기 ☐ 직접입력일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직접 입력하세요.						
※ 상세주소 표기 방법 : 동·호수 등 + (동명, 아파트/건물명)							
* 거주형태	☒ 자가 ☐ 임차 ☐ 무상거주 ☐ 기타						
거주형태상세	[]						
취득/거래가액,보증금	취득/거래가액 [] 만원,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저장 닫기			

□ 채무자의 최근주거이력은 ‘자가’, ‘임차’, ‘무상거주’, ‘기타’ 중 하나의 체크항목을 선택하며, 통상 과거 5년의 주거지 주소와 거주형태 등을 입력한다.

□ 연도는 숫자 또는 ‘현재’ 문구를 입력하며, 주거지 주소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 이하 항목에서 보고서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반영 여부가 ‘반영’인 경우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 시 PDF 문서로 출력되며, ‘미반영’인 경우 PDF 문서에 적용되지 않고 데이터만 임시 저장된다.

제1회 보고서의 경우 ‘반영’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2회 보고서 이후로는 ‘미반영’이 기본값으로 제공되는 항목이 많으며, ‘반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보고서 제출 시 저장된 내용이 PDF 문서로 출력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4) 직업이력

직업이력
직업이력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연도	직업	직장명	직위	월수입 (만원)	삭제	순서변경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력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연도	~		
직업	직접입력 ▼		직업 조회
직장명		직위	
월수입	만원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저장
닫기

□ 채무자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라 직업을 조회하여 입력하며, 연도, 직업, 직장명, 직위와 월수입을 기재한다. 「직업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며, 단어 또는 직업 코드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직업을 조회할 수도 있다. 자주 사용하는 직업은 드롭다운 리스트(dropdown list)에서 선택할 수 있다.

□ 팝업창 또는 드롭다운(dropdown) 방식의 체크항목 선택란에는 ‘기타’ 또는 ‘직접입력’란을 두어 관재인이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5) 파산 시기 및 원인

파탄시기 및 원인	
파탄 시기	2015 년 3 월
파탄 원인	☒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 실직 ☐ 사업실패 ☐ 주식 등 투자 실패 ☐ 이혼 ☐ 근로소득감소 ☐ 사업소득감소 ☐ 생활비 지출증가 ☐ 교육비 지출증가 ☐ 의료비 지출증가 ☐ 사기 피해 ☐ 재해, 사고 ☐ 보증채무 부담 ☐ 도박, 사치 등 낭비 ☐ 기타
(16 / 4000 Bytes) 파탄 원인 입니다	
저장	

❑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시기와 원인을 입력한다. 파탄 시기는 연도와 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이 가능한 경우 연도뿐만 아니라 월까지 입력이 필요하다. 파탄 원인의 체크항목에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 아래 빈칸에 파탄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과거신청경험

과거신청경험				
번호	제출법원	사건번호	결과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신청경험 입력 초기화				
* 제출법원	테스트테스트법원1			
* 사건번호	2024	개회	결과 선택	미종국
비고	(0 / 4000 Bytes) ※ 과거 신청 경험과 관련하여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 그 사유(ex 보장 불응, 변제금 미납)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저장 닫기				

❑ 채무자가 과거 회생, 파산 또는 면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개회’, ‘회단’, ‘간회단’, ‘파산’, ‘면책’ 사건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결과도 선택하여 입력한다.

(7) 이혼정보

이혼정보					이혼정보 입력
번호	이혼 시기	이혼 방법	재산 분할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정보는 최대 2건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이혼정보 입력 초기화					필수입력사항
이혼 시기	년 선택 월				
이혼 방법	☒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재산 분할	☒ 재산분할 없음 ☐ 재산분할 있음				
					저장 닫기

□ 채무자의 이혼 시기, 이혼 방법과 재산분할 등 이혼정보에 관하여 기재하며, 이혼정보는 최대 2건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8) 가족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성명	관계	성별	국적	나이	학력	직업	월수입 (만원)	부양 여부	동거 여부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입력 초기화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 성명												
* 관계	본인(채무자)											
* 성별	☒ 남 ☐ 여											
* 국적	대한민국											
* 나이												
학력	파악불가											
직업	직접입력 직업 조회 마지막 직업 입력											
월수입	만원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저장 닫기

❑ 채무자의 가족관계를 조사하여 입력한다. 가족관계 입력 시 먼저 '본인(채무자)'을 입력하여야 다른 가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와 동거 친족의 성별, 국적, 나이, 학력, 직업과 월수입을 입력한다.

❑ 본인이 아닌 가족 정보 입력 시 부양여부와 동거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해야 한다.

❑ 본인이 아닌 가족 정보 입력 시 학력이 '재학'인 경우 「직업란 학생 표시」 버튼이 나타나며, 버튼 클릭시 직업란이 학생으로 자동 설정된다.

(9) 파산채권 정보와 주요부채내역

파산채권 정보							
총액수(만원)	0 만원 저장 ☐ 직접입력 ※ 직접입력일 경우 체크 후 총액수를 직접 입력하세요. 직접입력을 선택한 경우 자동 합산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수	0명						

파산채권 주요부채내역							주요부채내역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채권자	발생시기	액수 (만원)	원금 (만원)	사용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부채내역 입력** *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 채권자	☐ 비금융기관 ☒ 금융기관 금융기관 조회						
발생시기	년 월						
액수	만원 원금 만원						
사용처	☐ 생활비 ☐ 의료비 ☐ 기존채무변제 ☐ 사업자금 ☐ 투자금 ☐ 대여금 ☐ 기타						
사용처 상세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 파산채권 정보에는 파산채권의 총액수와 채권자수를 입력하며, 주요부채내역을 입력하면 파산채권의 총액수와 채권자수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표시된다. 파산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주요부채내역만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 외 ○인’과 같이 한 명의 채권자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요부채 내역만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표시되는 파산채권의 총액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입력’ 항목을 체크하여 총액수를 직접 입력하여 저장한다.

□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기관조회」를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금융기관 이외에는 ‘비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채권자명을 직접 입력한다.

(10) 주요재단채권내역

주요재단채권 정보							
총액수(만원)	0 만원						
채권자수	0 명						

주요재단채권내역							재단채권 주요부채내역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채권자	채권내역	발생시기	액수 (만원)	원금 (만원)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 주요부채내역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 채권자							
* 채권내역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 임금 등 ☐ 기타						
채권내역상세							
발생시기	년	월					
액수	만원	원금	만원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저장](#) [닫기](#)

□ 재단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재단채권자명, 채권내역(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임금, 기타), 채권내역상세, 발생시기와 액수를 입력한다.

(11) 현 채무자 명의 재산

현 채무자 명의 재산		현 채무자 명의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견 여부	목록	취득(구입) 시기	시가 (만원)	구입대금의 출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현 채무자 명의 재산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보고서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 목록	☐ 없음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주택 ☐ 상가 ☐ 주택 임대차보증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 ☐ 자동차 ☐ 건설기계 등 ☐ 보험환급금 ☐ 유체동산 ☐ 회원권 ☐ 주식 및 지분증권 ☐ 현금 ☐ 예금 ☐ 기타					
목록 상세						
(상속)지분						
취득(구입) 시기	년 선택 월					
시가	만원 ※ 숫자로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아래 조사결과 의견란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입대금의 출처	☐ 매각대금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보험환급금 ☐ 대출금 ☐ 보상금 ☐ 재산분할 ☐ 증여 ☐ 상속 ☐ 기타					
구입대금의 출처상세	(0 / 4000 Bytes)					
* 조사의견	☒ 있음 ☐ 없음					
조사결과 의견	(0 / 4000 Bytes)					
* 조사결과	☒ 속행 ☐ 완료					
* 환가 내용	☒ 없음 ☐ 환가 포기 ☐ 환가 진행					
저장 닫기						

□ 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목록'의 체크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목록 상세, 지분, 취득 시기, 시가와 구입대금의 출처를 입력한다. 현재 '목록'의 체크항목 중 여러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여러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고 그 합계가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입력하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 재산 별로 별도 입력이 필요하다.

□ ‘목록’이 부동산인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시가를 입력하게 되면 관재인이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가’ 항목에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을 입력한다.

□ ‘목록’이 주택 임대차보증금인 경우 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제외한 가액을 입력한다.

□ ‘환가 내용’ 항목에서 ‘환가 포기’ 또는 ‘환가 진행’을 선택하는 경우 화면 하단에 ‘환가포기 재산’ 또는 ‘환가진행 재산’ 입력란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환가포기사유, 환가를 위한 업무수행과 진행계획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입력란에는 재산구분과 목록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12) 과거 채무자 재산, 배우자 등 가족 재산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건 여부	목록	매각시기	매각 상대방	액수 (만원)	사용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현 배우자 재산							전/현 배우자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건 여부	목록	명의자	시가 (만원)	취득(구입) 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							부모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건 여부	목록	명의자	시가 (만원)	취득(구입) 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							자녀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건 여부	목록	명의자	시가 (만원)	취득(구입) 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기타 재산 입력	
번호	조사의건 여부	목록	명의자	시가 (만원)	취득(구입) 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전/현 배우자 재산, 부모 재산, 자녀 재산, 기타 재산을 입력할 수 있으며, 현 채무자 명의 재산과 입력방식은 같다.

(13) 파산·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파산·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조사의견	목록	조사결과 의견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근주거이력, 직업이력, 가족관계, 파산채권, 재단채권, 현채무자 명의 재산,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전/현 배우자 재산, 부모 재산, 자녀 재산, 기타 재산, 기타 조사 사항에 적용되어 있으며, 조사의견을 '있음'으로 체크하고 조사결과 의견을 저장하면 현 출되는 항목이다.

(14) 면책 허부에 대한 의견

면책 허부에 대한 의견	
관재인 의견	

저장

□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여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다.

(15)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	
이의 재권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의 사유	(0 / 4000 Bytes)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	(0 / 4000 Bytes)

저장

□ 상단에 있는 ‘보고서 기본정보’의 ‘채권자 이의’ 항목을 ‘있음’으로 체크하고 이의자의 수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보고서 하단에 있는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에 이의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며 이의사유와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을 입력할 수 있다.

(16) 관재인의 종합 의견

관재인의 종합 의견	
관재인 종합 의견	

□ 사건에 관한 관재인의 견해 및 의견을 종합하여 서술한다.

나. 자료제출 체크리스트

(1) 채무자 제출자료 목록

채무자 제출자료 목록				
번호	서류목록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채무자) ☐	10번 제출 ☐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5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6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없음) 	☐
7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없음) 	☐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 - 임대차 관련				
8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없음) 	☐
9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10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 해당사항 없음(지금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11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② 계약서 사본	☐	☐ 해당사항 없음(지금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12	③ 영수증 사본	☐	☐ 해당사항 없음(지금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13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14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15	※ 오른쪽 ① ~ ⑨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① 사업자등록증명	☐		☐
16		② 휴업사실증명	☐		☐
17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18		④ 소득금액증명	☐		☐
19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20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21		⑦ 표준채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22		⑧ 폐업증명서	☐		☐
23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24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25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26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27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28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29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 해당사항 없음(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30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 해당사항 없음(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31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 해당사항 없음(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32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	☐ 해당사항 없음	☐

저장

삭제

□ 채무자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 32개의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제출’ 항목에 체크하고, 미제출 시 채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기재한다.

□ 서류를 개별적으로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PDF 파일로 제출한다.

(2) 보정명령 외 추가 자료제출 목록

보정명령외 추가 자료제출 목록

추가 자료제출 입력

번호	서류목록	제출 여부	제출 및 미제출 관련 의견	삭제
조회 중 입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제출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서류목록	
* 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제출 및 미제출 관련 의견	(0 / 4000 Bytes)

저장

닫기

□ 법원의 보정명령 이외에 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입력하며, 서류의 제출 및 미제출에 관한 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3) 채무자의 가계수지표

채무자의 가계수지표

생계비의 조달		액수(만원)	생계비의 지출	액수(만원)
급여 또는 자영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 가스 ·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피복비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기타	
수입합계		0 만원	지출합계	0 만원

저장

삭제

- 채무자 및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생계비 조달 및 생계비 지출 항목을 기재한다.
- 생계비의 조달 항목 입력 시 수입합계를, 생계비의 지출 항목 입력 시 지출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다. 업무수행일지

(1) 업무수행일지, 환가 및 배당 업무,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관재인용)

업무수행일지(관재인용)
업무수행일지 입력

번호	일시	업무내용	비고(기타업무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일지(관재인용)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일시

(~)

* 업무내용

☐ 자료제출·설명요청
☐ 면담(대면)
☐ 면담(전화)
☐ 기타

비고

(0 / 4000 Bytes)

저장
닫기

환가 및 배당 업무(관재인용)
환가 및 배당 업무 입력

번호	일시	업무내용	비고(기타업무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관재인용)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관재인용) 입력

번호	일시	업무내용	비고(기타업무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의 업무수행일지, 환가 및 배당업무,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의 일시와 업무내용을 입력한다.

(2) 보조인 정보입력, 업무수행일지,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보조인용)

보조인 정보
보조인 정보 입력

번호	보조인 성명	생년월일	업무보조기간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보조인 정보 입력
초기화

* 필수입력사항

* 보조인 성명	
* 생년월일	(예 : 1980.05.05)
* 업무보조기간	~

저장
닫기

업무수행일지(보조인용)
업무수행일지(보조인용) 입력

번호	일시	업무보조내용	비고(기타보조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보조인용)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보조인용) 입력

번호	일시	업무보조내용	비고(기타보조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재업무 보조인의 정보, 업무수행일지, 우편물 등 수령 및 채무자 교부의 일시와 업무보조내용을 입력한다.

3 소송서류 입력과 보고서 제출

목록 맨 아래로 이동 보고서 제출하기

법 원	테스트테스트법원1	사건번호	2014하단1000040 (2014하면1000040)
재 판 부	제1파산단독	사 건 명	파산선고
신 청 인	백철형	채 무 자	백철형 (890904-1)

1.파산관재인 보고서 2.자료제출 체크리스트 3.업무수행일지

업무수행일지(관재인용)

업무수행일지 입력

번호	일시	업무내용	비고(기타업무내용, 대상물 등)	삭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선택 시 입력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보고서, 자료제출 체크리스트와 업무수행일지를 모두 작성한 후 「보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송서류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 보고서 제출은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 2단계 ‘전자서명’, 3단계 ‘문서제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
2단계
전자서명
3단계
문서제출

1 소송서류입력

2 첨부파일

3 작성문서 확인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하단의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

* 서류명

직접입력 □ 파일명과 동일

* 파일첨부

첨부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넣으세요

파일첨부

선택삭제

모두삭제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1.일반문서(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 : HWP, DOC, DOCX, PDF,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가 완료되면 [등록]버튼을 눌러 첨부파일을 첨부서류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에 특수문자(/, ₩, :, *, %, ", <, >, |, =, %,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양식은 반드시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표시제외)의 여백을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첨부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파일명	등록일	삭제	순서변경
조회 중 입니다.					

임시저장

이전

작성완료

□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에서는 작성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명의인(파산관재인)을 저장한 후 첨부파일을 등록한다. 그리고 작성된 파산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형식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한다.

□ ‘작성문서 확인’ 단계에서 작성된 ‘파산관재인 보고서’, ‘자료제출 체크리스트’, ‘업무수행일지’, ‘첨부파일’이 모두 PDF로 변환되어 서류목록에 조회된다.

□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3단계 문서제출 단계로 넘어가며,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후 제출한다.

□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제출된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부록

서식 및 양식

[서식 1] 서울회생법원 파산○○○단독 파산선고 안내문

서울회생법원 파산○○○단독 파산선고 안내문

재산·소득에 관한 채무자의 설명의무

● 파산관재인에 요청에 대한 설명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이하의 법률은 같은 법률을 의미).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설명 불응 시 면책불허가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제564조 제1항),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으며(제319조, 제320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653조).
- 만일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설명의 대상이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650조, 제652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과 채무자의 신분상 제약

-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위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제384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단소속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제1항). 다만,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가능합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복권(면책확정 포함)될 때까지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탁자(신탁법 제11조), 공법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 변리사(변리사법 제4조), 공증인(공증인법 제13조)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주소의 보정 (신속한 면책절차 진행을 위한 방법)

● 채권자에 대한 송달 여부의 확인 방법

-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률 제562조).
- 채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의신청기간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 되어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송달, 채권자 주소변경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면책결정이 지체됩니다. 아래의 주소보정 방법에 따라 신속히 주소보정 또는 공고(공시송달)신청을 마쳐주어야 면책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 채무자는 파산선고한 날짜로부터 2주가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로 접속한 다음 ‘대국민서비스’ 선택 → ‘나의 사건검색’ 창에서 법원선택 → 사건번호, 당사자명 검색 → 화면 상단의 ‘사건진행내용’ 클릭 → 진행내용의 ‘송달’ 선택 후 ‘확인’ 클릭의 순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지 안내문 참조).

● 채권자 주소의 보정방법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아는데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으로 접속하여, “Search”란에 “주소보정”을 입력 · 검색한 다음, “[민사] 주소보정서”〈별지 양식 1〉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서울회생법원 1층 민원실에 1부를 접수하면 됩니다.

②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통신사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예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보증인인 경우 : 채권자를 보증인으로 입보받은 금융기관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해당 채권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에 대한 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공고갈음신청 : 위와 같은 모든 방법으로도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갈

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실은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공고갈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면책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지 양식 2〉에 따라 ①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일자, 발생원인, 액수, ② 해당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유, ③ 해당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채무자가 한 조치를 기재한 서면을 **채권자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4주 전까지** 서울회생법원 1층 민원실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송달이 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별지 양식 1〉 또는 〈별지 양식 2〉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속한 면책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의 면책동의서〈별지 양식 3〉 1부를 서울회생법원 1층 민원실에 제출하면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4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별지 안내문〉

채권자에 대한 송달 여부 확인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 접속

2.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 채무자명 입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파산사건은 2017. 3.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용 클릭

사건진행내용 클릭!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6하단101042	사건명	[전자] 파산선고
신청인	장O자	채권자	(주)우리은행 외 7명
재판부	제203단독 (전화:02-530-2831, 02-3016-3688)		
접수일	2016.10.20	증국결과	
송달료, 보관금, 증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4. 진행내용의 ① “송달” 선택, ② “확인” 체크, ③ 송달 여부 확인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 사건번호 : 서울화생법원 2016하단101042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6하단101042	사건명	[전자] 파산선고
신청인	장O자	채권자	(주)우리은행 외 7명
재판부	제203단독 (전화:02-530-2831,02-3016-3688)		
접수일	2016.10.20	증국결과	① 송달 선택!
진행내용			
② 확인란에 체크! 송달 ▼ 선택			
,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 송달결과는 법정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송달 여부 확인!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6.11.12	신청인대리인 이정선에게 예납명령정본 송달	2016.11.14 도달	
2017.01.12	신청인대리인 이정선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송달	2017.01.13 도달	
2017.01.18	채권자3 신용보증기금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송달	2017.01.20 도달	
2017.01.18	채권자4 롯데카드(주)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송달	2017.01.23 도달	
2017.01.18	채권자5 신한카드(주)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송달	2017.01.23 도달	
2017.01.18	채권자2 유아이제심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송달	2017.01.23 도달	

※ 송달내역이 파산사건번호인 “20〇〇하단〇〇〇” 사건검색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면책사건번호인 “20〇〇하면〇〇〇” 사건검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양식 1〉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____하단_____

[담당재판부 : 제____단독]

채 무 자 _____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_____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_____ (우편번호 _____)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_____)
20 .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으면 뒷면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면책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별지 양식 2〉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같은 신청

사 권 20 하단(하면) 파산선고
신청인(채무자)

아래의 채권자에 대하여 송달에 같은하는 공고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 성명(상호)		채권자목록순번		
채권액		채권의 내용 ¹⁾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 제출 ☐ 제출안함		
송달 시도 내역	회차	주소	송달결과 ²⁾	비고 ³⁾
	1			
	2			
	3			
	4			
	5			
채권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연락두절 ☐ 기타 (구체적 사유 기재)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한 조치		☐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통신사 가입자 사실조회신청 ☐ 알고 있는 계좌번호로 명의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인적정보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기타 (구체적 조치 기재)		

1) 대여금/대출금/물품대금/장래의 구상권 등

2)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

3) 채권자목록 기재 주소지/초본 기재 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 기재 대표이사 주소지/사실조회
회신 기재 주소지 등

〈별지 양식 3〉

면책동의서

사건번호 20__하단_____

[담당재판부 : 제____단독]

채무자 성명 _____

파산관재인 성명 _____

채권자 성명	(서명날인)
채권자 주소	
채무의 발생일자	____년 ____월 ____일 (예시)
채무의 발생원인	☐ 금전대여, 카드대금 ☐ 매매계약 ☐ 투자계약 ☐ 손해배상 ☐ 기타
채무의 액수	_____원

※ 해당 □란에 ✓표시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3주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신속한 면책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채권자별로 1명당 위 양식을 사용하고, 여러 채권자에 대한 내용을 1장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파산선고 이후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채무자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1. 법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전화번호(02-500-0000)는 등록하시고 법원전화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과 연락이 안 되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게 해주세요.
2. 문건명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예: 예납금납입영수증, 채권자목록변경허가신청서, 주소보정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등등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 보정서라고는 쓰지 마세요.
3. 채권자목록은 채권자를 일부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도 채권자전부(1~끝번호까지)를 표시해야 하며, 삭제 시에는 삭제한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뒤에는 채권자주소를 모두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소가 없으면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목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사건이 끝나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정서(특별송달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었을 때 사건진행속도가 빠릅니다. 파산사건은 공시송달이 없으니 공시송달신청은 하지 마세요(면책불허가 되고, 채무자가 송달이 안 될 때만 공시송달됩니다).
6. 문서(주소보정서나 야간특별송달 등등)제출 시 제출일로부터 7일후에 송달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14일후에는 송달결과를 확인한 후에 송달불능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주소확인 등 빨리 송달될 수 있도록 절차에 협력하여야 사건처리가 빨라집니다.
(송달확인방법 - '파산관재인 서류안내문' 확인 또는 '인터넷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이용)
※ 야간특별송달이나 공휴일특별송달은 해당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파산○○○단독 -

[서식 2]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자료제출 안내문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자료제출 안내문

2024하단○○○○ 파산선고사건의 채무자
홍길동(○○○○○○○-○○○○○○○○)

2024. ○○. ○○.

1.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의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고(같은 법 제658조),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2. 자료 제출 기한(수령일로부터 7일)

채무자는 이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별지 양식[자료제출목록-보고서작성용] 뒷면에 첨부하여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양식에 대한 한글파일 또는 워드파일이 필요하실 경우,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동 자료제출 안내문에 기한 서류는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1차 서류인바, **파산신청 시 기재출한 서류 외에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자료제출목록표를 작성하여 누락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문건 내용이 아래의 기간(과거 5년, 과거 3년 등)과 다를 경우에도 새로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재인 면담 후 아래 서류 외에 추가 보정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재인 요청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파산관재인	(○○○○○) 서울 서초구 ○○○길 ○○, ○층 (서초동, ○○빌딩)
변호사 ○○○	☎ 02-500-○○○○ (팩스) 02-500-○○○○
사무소 연락처	□□□@○○○.com

〈 아 래 〉

- ①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②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 전체 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③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전국 단위 세목별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 위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모두 발급받아야 함. 예를 들어 5년간 서초동, 역삼동, 논현동, 무교동, 다동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서초구, 강남구, 중구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면 됨]
- ④ 채무자의 차량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 ⑤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⑥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서(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⑦ 채무자의 현재부터 과거 3년간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채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총 9항목을 체크하고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 ⑧ 채무자의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공과금,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함, 채무자의 신분증을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공과금, 카드, 급여 등과 관련한 거래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발급가능함, 가족명의통장으로 거래되었다면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 ⑨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 ⑩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⑪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재산분여(할) 내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⑫ 수입에 관한 자료
 - 자영수입의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
 - 급여수입의 경우 - 급여증명서 최근 2년분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연금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 각 수급증명서,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

〈자료제출목록〉

사건번호 : 20____하단 _____ 이름: _____ (인)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뒤이어 신용교육수료증과 이번엔 새로이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의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10번 제출'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엔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제출		☐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제출		☐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 제출		☐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제출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번호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엔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5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전국 단위 및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제출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번호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엔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6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7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번호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관련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8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9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중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만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
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
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번호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	-----------------------------	-----------------	------------------	----------------------------	-----------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0	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 료)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지금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 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 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
11	② 계약서 사본	☐	☐ 제출	☐ 협조거부()	
12	③ 영수증 사본	☐	☐ 제출	☐ 기타()	

번호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13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 제출		☐
14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 제출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생명보험협회(02-2262-6600)에서 발급 가능하며,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은 각 보험회사에서 발급.

※ 필독 ※

1.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유지중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부탁하여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약관대출금 내역이 포함된 서류로 발급할 것.

번호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④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분) - 개인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 제출※					
15	① 사업자등록증명	☐	☐ 제출		☐
16	② 휴업사실증명	☐	☐ 제출		☐
17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 제출		☐
18	④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분) ※필수 제출※	☐	☐ 제출		☐
19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제출		☐
20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제출		☐

21	⑦ 표준채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제출		☐
22	⑧ 폐업증명서	☐	☐ 제출		☐
23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제출		☐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24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	☐ 제출		☐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25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제출		
26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제출		☐
27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제출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채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번호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28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 세내역서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 협조거부() ☐ 기타()	☐
번호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채무자)	10번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자료 제출					
29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 제출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
30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 제출		☐
31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 제출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번호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 관련 서류	파산 신청시 제출	이번에 새로이 제출	해당사항 없음
32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전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 상담보고서 등)	☐	☐ 제출	☐

[서식 3] 파산관재인 안내문

파산관재인 안내문

파산관재인 변호사 ○○○

■ 파산관재인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전화 번호	02-500-0000 (단순한 업무문의는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하고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전화문의하는 것은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500-0000
주소	서울 서초구 000길 00(서초동, 00빌딩 0층) 변호사 000(우:000000)		
이메일	000000@naver.com(파산사무소 파산업무 공식이메일, 이메일 관리담당자 책임보조인 000)		
주의사항	1. 단순한 업무 문의(서류 발급처, 주소보정 업무 등)는 파산 신청 당시 대리를 한 사무실(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전화 문의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파산 선고 당시 배부해 드린 안내문에 모든 절차 및 자료발급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검토 후 자료준비 바랍니다). 2.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주로 채무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드리오니, 파산관재인 사무실 전화번호(02-500-0000)를 저장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재인사무실을 찾는 방법] ① 교대역 ○번 출구로 나와서, ② 왼쪽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은행) ③ 직진 후 '○○편의점', '○○○ 교대역점' 사이 골목으로 우회전 ④ 직진 방향 좌측 ○번째 건물 0층		약도 첨부	

■ 채무자 주소보정의 중요성

파산관재인이 다음 기일(예컨대, 제1회 집회기일)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완료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속행되게 됩니다(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채무자는 직접 또는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란에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진행상황을 검색**하고, ② 그 검색결과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하여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법인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부 접수창구에 주소보정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제도안내

○ 면제재산제도의 안내

파산채무자의 재산 중 일정한 범위의 재산(① 일정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② 6개월간의 생활비)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신청은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관재인 면담 시 진행방법

○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기록,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2주 ~ 1달 사이에 파산관재인 면담약속(최소 1회 이상)을 잡게 됩니다.** 이 때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사무소의 주소를 미리 확인하여 약속시간에 파산관재인사무소로 출석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해야 될 1차 서류들의 제출방법

○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제출기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 누락된 서류를 파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사무실에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방법

‘채무자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첨부한 ‘자료발급방법 안내’, ‘자료발급방법 상세안내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

보정명령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파산선고일에 수령한 **‘자료제출목록’** 양식에 ① 제출 여부를 표시하

며, ② 그 순서에 맞게 편철하여 제출할 것, ③ 만약 제출서류목록에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란(제출 유무)에 표시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설명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호치케스) 제거 및 제출서류의 복사본의 보관

선고 이후 준비하셔서 보내주셔야 할 서류들은 반드시 ① 스테이플러(호치케스)를 다 빼시고, ② 복사를 하신 후, ③ 제출서류의 복사본 1부는 채무자가 보관, ④ 1부는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세요(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복사본 1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미리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청 가능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한 서류는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1차 서류인바, 관재인 면담 후 추가 보정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재인 요청 시 추가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같은 원본(재발행이 안 되는 서류)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종결 이후 7일 이내에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건종결 7일 이후에는 폐기예정입니다.

자료발급방법안내

1. 구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차량등록원부



- ① 상세증명서로 발급
- ②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내역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③ 세목별과세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2. 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① 현재 소유 부동산,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 까지 사이에 재산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② 본인 아니어도 발급 가능함

3. 생명보험협회

생존자보험가입조회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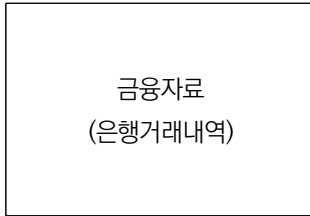
- ① 채무자 본인조회 발급
- ② 모든 보험의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발급
(예 : 교보생명, 삼성생명)
- ③ 해약한 경우에도 발급
- ④ 보험계약 유지 시 예상보험해약환급금내역서 발급
- 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발급가능

4. 세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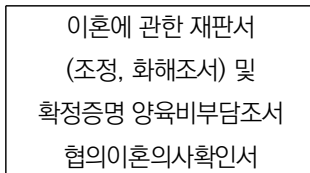
사실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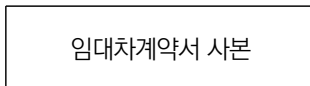
- ① 채무자 본인의 과거 3년간의 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 발급
- ②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 ③ **9항목을 체크하고**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

5. 은행

- ①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본인의 통장거래내역
- ②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③ 가족명의로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6. 법원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발급

7. 채무자 보유 또는 부동산 중개소 등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자료발급 방법 상세안내서

1. 구청 방문

1번부터 4번까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방법

- ①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습니다.
- ②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전체의 변동사항,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습니다.
- ③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받습니다.**

5번(전국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① 채무자 본인의 과거 **5년간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②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 **위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③ 지방의 관할 구청에 직접가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④ 부동산·차량·회원권의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건축물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6번, 7번(차량등록원부 및 시가 증명자료) 발급방법

- 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를 **갑구, 을구 모두** 나타난 것으로 발급받습니다.
- ② 차량등록원부는 차량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가 증명자료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차량을 검색한 후, 견적 금액이 표시되도록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588-2188)

2.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출력가능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전화 1544-0770)

8번, 10번(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는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생명보험협회 방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방문

13번, 14번(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예상해약환급금내역) 발급방법

- ① 채무자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를 발급받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전화 02-2262-6570,

인터넷(내보험 찾아줌)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생명보험협회 본사는 보험가입조회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각 지역본부 및 지부를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전화 02-3702-8500,

인터넷(내보험 찾아줌) <https://cont.knia.or.kr/main.knia>]

지하철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케이트원타워 B동 15, 16층에 있습니다.

- ② 발급받은 생존자보험가입조회에 나타난 모든 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단,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함)
- ③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는 각 보험사(예를 들면,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습니다.
- ④ 이미 **해약**한 경우에도 **영수증 또는 해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⑤ 현재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보험해약환급금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⑥ 보험가입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⑦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최종 예상해지환급금을 표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인터넷 홈택스 <https://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또는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문의)

15번부터 23번까지(사실증명 등) 발급방법

- ① 아래의 9항목을 체크하여 발급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 ☑ 소득금액증명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② 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발급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③ 세금을 낸 사실이 없어도 위의 항목을 체크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5. 은행방문

28번(은행통장거래내역) 발급방법

- ①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공과금, 카드, 급여이체 등과 관련한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② 채무자가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은행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명의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에서 발급).
- ③ 은행거래내역에 보증금, 계약금, 급여 등의 내용은 각각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6. 법원방문

(인터넷 <https://www.scourt.go.kr>, 전화 02-3480-1100)

10번(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발급방법

- ①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파산신청 시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부동산 등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경매절차의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②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없으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③ 현재 진행 중이라면, 경매절차에 따라서 아직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④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관재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9번(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방법

- ①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② 만일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

약서를 복사하여 오거나, 부동산중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③ 현재거주지가 임차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9번에서 31번까지(이혼 관련 서류) 발급방법

- ① 최근 2년 이내 이혼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②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에 관한 재판서, 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에 대한 조서의 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또는 '대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 ③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또는 '대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 ④ 법원 방문 전, 반드시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 대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서식 4] 영수증

영 수 증

서울회생법원 제○○○단독 귀하

사 건 2024하단○○○ 파산선고
2024하면○○○ 면책
채 무 자 홍길동

아래 서류는 2024. 1. 1.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1. 파산선고결정 및 파산선고 안내문
2. 자료제출안내문

주민등록번호 111111-222222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 ○○○○
영 수 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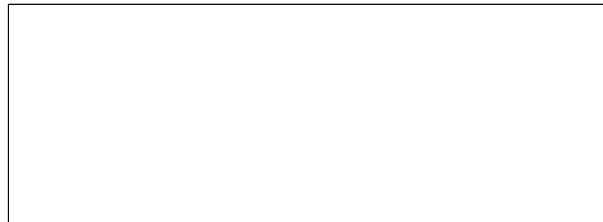
[서식 5]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
 전화: 02) 500-1000 팩스: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6. 3.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 파산단독
 제 목 :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파산관재인 인감을 신고한 후 사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6]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

전화: 02) 500-1000 팩스: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2호

발 송 일 자 : 2024. 6. 3.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 파산단독

제 목 : 파산선고 기입등기 촉탁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파산선고 기입등기 촉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7]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
 전화: 02) 500-1000 팩스: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3.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 파산단독
 제 목 :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방법지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희망보관장소
 - 가. 대한은행 서초지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 00빌딩 1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8] 채권신고서 안내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
전화: 02) 500-1000 팩스: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4호
발 송 일 자 : 2024. 6. 3.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 파산단독
제 목 : 채권신고서 안내문

1. 귀사(하)의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와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채무자 일지매(00. 00. 00생)는 2024. 6. 3. 10:00부로 서울회생법원 제000파산단독 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귀사(하)께서는 본건 공문 별첨 1.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2024. 7. 4. 까지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파산과로 채권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자 집회에서 신속한 채권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사전채권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24. 8. 7. 11:0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0별 관) 제0호 법정**으로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결정으로 귀사(하)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나, 신속하고 성 실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귀사(하)의 채권이 조기에 배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채권신고서 양식을 파일로 받으실 분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 1부 |
| 2. 파산채권자표 및 파산채권신고서 | 각 3부 |
| 3. 채권목록 | 3부 |
| 4. 위임장 | 1부 |
| 5. 접수증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필요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채무자 ○○○ 채권신고서 재증” 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법원(우: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02) 530-○○○○)

채권신고 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각 3통 ② 증거서류 사본 각 2통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2통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⑤ [대리인 신고]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통

채권신고 시 유의사항

1.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허위 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어음, 수표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 수표의 앞·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 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반드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작성요령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한다.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한다.
3.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 금액을 기재한다.
4. 별채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 가치는 1억 5천만 원인 경우<별채권○○○>란에 담보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한다.

5. 채권목록 기재례

〈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1	1,000,000	약속어음	2020.3.3.	1,000,000	2020.6.3	서울	서울	국민은행 성동지점	채무자	甲 乙	신고인

〈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	1,000,000	대여금 채권	2020. 5. 30.에 금 1,000,000원 변제기 7. 30. 이자 월 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 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3	30,000,000	매매대금 채권	2020. 6. 20.부터 8. 20.까지 상품OO(단가 100만 원, 수량 50개)의 납입대금 5,000만 원 중 잔대금(금 2,000만 원은 이미 수령함)

(A면) 채권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파 산 채 권 자 표

채권자표번호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신고연월일,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 또는 후순위 파산채권의 유무 및 내용,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예정부족 채권액은 뒷면의 채권신고서 기재와 같음.

① 채권신고 접수일 작성 서울회생법원 법원사무관 등 ㉠

② (채권조사전의 변동) 20 . . . 금 원 취하
신고액 금 원으로 변동
법원사무관 등 ㉠

〈채권조사의 결과〉				
③ 조사기일 20 . . . 법원사무관 등 ㉠				
④ 관재인 인부	전액시인() 전액부인() 일부 이의(이의금액 원) ※ 구체적 인부의 내용은 별지 채권인부표 기재와 같음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 시인액(금 원)			
⑤ 채권자 이의				
⑥ 채무자 이의				
⑦ 이의철회	일시 (일부철회인 경우 금액 원)	법원사무관 등 ㉠		
⑧ 신고취하	일시 (일부취하인 경우 금액 원)	법원사무관 등 ㉠		
⑨ 채권확정소송결과	법원사무관 등 ㉠			
⑩ 채권자 명의변경	있음() 내역은 아래와 같음(상세는 별지 명의변경신고서 기재와 같음)			
⑪ 확정 파산채권액	금 (₩ 원)	법원사무관 등 ㉠		
⑪ 〈배당의 결과〉				
배당횟수	배당일시	배당금액	배당후 잔존채권액	관재인 기명날인
1	20 . . .	원	원	
2	20 . . .	원	원	
3	20 . . .	원	원	
4	20 . . .	원	원	
⑫ 면책결정 확정일				

(B면) 채권자가 기재하십시오.

파 산 채 권 신 고 서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2024년 월 일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2024하단○○○○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증거서류 첨부)

채 권 자 성명(상호, 대표자) (인)

주소 (우:)

통지·송달받을 장소 (우:)

전화번호 팩시밀리

전자우편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리 인 성명(상호, 대표자) (인)

주소 (우:)

연락처(사무담당자) (☎)

배당 시 송금받을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계좌로 송금 시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직접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은 추후 관재인의 배당통지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귀중

채권액	원금	₩	채권의 종류	별지 채권목록과 같음
	이자손해금	₩		
	합계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별지 채권목록과 같음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후순위 파산채권을 포함하는 경우 그 구분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 채권액			(목적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부족채권액) ₩	
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주의) ① 채권신고서(채권목록 포함) 각 3통 ② 증거서류 사본 각 2통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사본 2통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⑤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통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채 권 목 록

〈어음금, 수표금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별지〉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위임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위임사항: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일지매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채권 등 신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일체의 행위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 . . .

위 임 인:

성 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귀중

〈별지〉

파 산 채 권 신 고 접 수 증			
사건번호	2024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	접수번호	
채권자 성명			
위 대리인			

※ 이 접수증은 법원에 출석할 때 항상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화생법원 제○○○ 파산단독

파 산 채 권 신 고 접 수 증			
사건번호	2024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	접수번호	
채권자 성명			
위 대리인			

※ 이 접수증은 법원에 출석할 때 항상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화생법원 제○○○ 파산단독

[서식 9] 통고문

통고문

알 림

채무자 일지매

위 채무자는 2024. ○. ○. 10:00 서울회생법원 파산 제○○○단독으로부터 2024하단○○○○로 파산선고를 받아,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주거, 이 사무실 및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산은 본인이 점유관리하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연락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00 00빌딩 1층 ☎ 02) 500-1000)

[서식 10]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6. 4.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파산단독
 제 목 :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가 상대방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한국빌라 101호에 관하여 2023. 8. 17. 접수 제481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채권자들이 상대방(6000-00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00-0000 현대아파트 00동 00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계대상 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000 구상금 등
 원고: 한국공사
 피고: 주식회사 대한물산, 일지매
 소제기일: 20 . . .

2. 위와 같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3호

제 목 :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④

등본인을 확인함 ⁴⁾
. . .
(인)

4) 등본임을 나타내는 위 표는 법원용에는 기재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할 문건에만 기재해야한다. 즉, 파산관재인은 허/부의 날인이 필요한 허가신청서를 2부(법원용과 관재인용) 제출한 후 이 중 1부를 허가신청서 등본으로 수령하는데 이 경우 등본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다. 이하 서식에서는 위 표를 생략함.

영 수 증⁵⁾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법원주사(보) 귀하

사 건: 2024하단○○○○ 파산선고

1.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위 서류는 . . .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

영 수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TEL: 02-500-1000)

5) 이하 양식에서는 영수증을 생략함.

[서식 11] 소송절차수계신청서(원고)

소송절차수계신청(원고)

사 건 2023가단○○○○○ 구상금 등
신 청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빌딩 1층(우: ○○○○○)
 Tel: 02-5○○-1○○○, Fax: 02-5○○-1○○○
 E-mail: ○○○○@korea.co.kr
피신청인(원고) 한국○○○○공사
피 고 상대방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한국○○○○공사의 피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본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채무자 일지매(6○○○○○-○○○○○○○○)은 2024. 4. 18. 10:00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6조 제2항,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원고인 한국○○○○공사가 피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 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피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고자 하오니,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 1부
2. 소송절차수계허가서(등본, 파산법원) 1부

20

위 신청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단독 귀중

[서식 12]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번 호 : 2024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발 신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0 00빌딩 1층(우: 000000)

발 신 일 : 2024. 0. 0.

제 목 :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

1. 채무자 일지매(5000000-00000000)는 2024. 1. 1. 11:00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일지매 소유의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000아파트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2024. 1. 1.자로 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현재 귀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신청자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채권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조속한 환가를 위하여, 위 법 제3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귀원의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오니, 위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고, 적법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채권자(법 제411조, 제412조)로서 별채권 행사 차원에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전은 여전히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금전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본 관재인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고, 위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파산재단으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선고결정 | 1부 |
| 1. 관재인선임증 | 1부 |
| 1. 파산채권자목록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13]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파산선고에 따른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사 건 2024카단○○○ 가압류
신 청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채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빌딩 1층(우: ○○○○○)
 [전화: 02) 5○○-1○○○, 전송: 02) 5○○-1○○○]
피 신 청 인 임격정
(채권자) 서울 은평구 ○○동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일지매는 지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4. 6. 22. 10:00 위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환가 및 배당 등 향후 절차를 위하여 변호사 홍길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가압류집행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의 위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실효의 의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집행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파산실부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93면 참조).

4. 결론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등 향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처분의 외관을 없애고자 부득이 귀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 및 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별지 부동산 가압류목록 | |
| 1. 파산선고결정 등본 | 1통 |
| 1. 채권자 목록 등본 | 1통 |
| 1. 선임증 | 1통 |

20 . . .

위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귀중

[서식 14]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승계 신고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번 호 : 2024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발 신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0)

발 신 일 : 2024. 0. 0.

제 목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및 채무자 지위승계 신고

1. 채무자 일지매(5000000-00000000)은 2024. 1. 1. 11:00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일지매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7-1 한국아파트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24. 1. 1.자로 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현재 귀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 법원에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경우, 적법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전은 여전히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금전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본 관재인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파산재단으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선고결정 | 1부 |
| 1. 관재인선임증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15] 배당금교부신청

배당금교부신청

사 건 2024타경1111 부동산강제경매
 채 무 자 일 지 매(○○○○○○○-○○○○○○○)
 서울 ○○구 ○○동 100-100
 신 청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빌딩 1층
 전화: 02-500-1000 팩스: 02-500-1000
 전자우편: ○○○@korea.co.kr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이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일지매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부채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귀원에 2024하단 1200, 2024하면1200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법원은 2024. ○. ○. 10:00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에 서울 ○○구 ○○동 356-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귀원 2024타경1111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4. 1. 1.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 | |
|--------------------|-------------|
| • 갑을병정 주식회사(신청채권자) | 11,162,136원 |
| • 가나다라 주식회사(가압류권자) | 1,009,424원 |
| • ABCD 주식회사(가압류권자) | 706,423원 |

그런데 위 배당기일 이후, 귀원은

- 갑을병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00금제○○○2호로,
- 가나다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00금제○○○3호로,
- ABC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00금제○○○4호로 각 공탁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수령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8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3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상,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공탁한 공탁금을 가압류권자들이 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이상, 그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파산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압류권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가압류권자가 회수하기 이전에는 배당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가압류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이전에 파산선고가 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원 2024타경111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파산관재인은 위 채권자들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오니, 가압류권자들에게 공탁된 공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신청서 표지 및 파산 및 면책신청서	1부
1.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1부
1. 파산선고결정	1부
1. 관재인선임증	1부
1. 배당표	1부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지방법원 집행계 귀중

[서식 16]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전화: 02-○○○○-0725, 팩스: 02-○○○○-0811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22.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제 목 :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한 임의매각 허가신청

본 파산관재인은 2024. 3. 21. 이 사건 파산재단 부동산 2필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
 ○○ 임야 3무보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 임야 5752㎡)에 대하여 ○○○ ○○○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번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귀 법원의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
 을 영수하여 파산관재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자 일지매(○○○○○○○-○○○○○○○○, 등기부상 주소: ○○시 ○○동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이하 ‘매도인’)과 ○○○(이하 ‘매수인’)은 하기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4통(법원용 1부, 공인중개사용 1부 포함)을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기로 한다.

매매 부동산의 표시: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 임야 3무보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 임야 5,752㎡

제1조 (매매대금)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백만 원(1,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은 즉시 파산관재인 임치금계좌(신한은행 ○○○-○○○-○○○○○○○ 예금주: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본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 (1)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더불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금액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역시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매의 비용부담 등)

- (1)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국세, 지방세 기타 각종 공과금은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 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매도인이, 인도받은 날 이후로부 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
- (2)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이전비 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3) 본건 부동산의 시설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본건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매도인에게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 약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부터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 이 나지 않아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계 약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해산/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등)

-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거래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시세확인서	1부

20 . . .

매도인: 채무자 일지매(○○○○○○○-○○○○○○○○○)

등기부상 주소: ○○시 ○○동 ○○○○

위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서울 ○○구 ○○가 ○○ ○○빌딩 ○층

매수인: ○○○(○○○○○○○-○○○○○○○○) (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번지

중개업자

성 명: ○○○ (인)

상 호: ○○○○○○○부동산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

허가번호: ○○○○-○○○○

전화번호: 02-○○○○-○○○○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3호
제 목 :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한 임의매각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

[서식 17]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법 원 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전화: 02-○○○○-0725, 팩스: 02-○○○○-0811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22.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제 목 : 임의매각허가신청(자동차)

본 파산관재인은 2024. 6. 22. 이 사건 파산재단 자동차(서울41거○○○○, 레간자1.8S○HC)에 대하여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금 1,300,000원으로 정하여 귀 법원의 허가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300,000원을 영수하여 파산관재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별지 목록 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자동차매매계약서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이하 ‘매도인’)과 ○○○(이하 ‘매수인’)는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법원제출용 1부 포함)을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키로 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서울○○거○○○○	차대번호	KLAVA698DWB165620
차 종	승용자동차	차 명	레간자1.8SOHC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매매대금) 본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은 금 일백삼십만 원(W1,3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 금 일십삼만 원(W1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금 일백일십칠만 원(W1,170,000원)은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건 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은 즉시 매도인의 계좌(신한은행 100-0000-00000000, 예금주: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 (사고책임) 매수인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등록지체책임) 매수인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

제9조 (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3.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부터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회생법원(파산 제○○○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아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해산/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4. 분쟁의 해결 등

-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거래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첨 부 서 류

- | | |
|---------------|----|
|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1부 |
| 1. 시세확인서 | 1부 |

20 . . .

매도인: 위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회관 11층 내

매수인: ○○○(○○○○○○○-○○○○○○○○) (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3호

제 목 : 임의매각허가신청(자동차)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⑨

[서식 18]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발신인: 임차인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우: ○○○○○)

[전화: 02-○○○○-0725, 팩스: 02-○○○○-1811]

수신인: ○○○

서울 양천구 ○○동 ○○호 ○○연립 ○○호 (우: ○○○○○)

1. 임차인 ○○○(○○○○○○○-○○○○○○○)는 2024. 5. 22. 10:00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가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으로, 본 관재인이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63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관재인은 임차인 ○○○가 임차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합니다.

다 음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월4동 ○○○-○호 우영연립 ○○○호

임대부분: 연립주택전부(지하실 포함)

4.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때 본 건물을 명도와 동시에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선고결정문 사본 | 1부 |
| 1. 관재인선임증 사본 | 1부 |

20

위 발신인 임차인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19]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발신인: 임대인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우: ○○○○○)
[전화: 02-○○○○-0725, 팩스: 02-○○○○-1811]

수신인: 임차인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호 우영연립 ○○○호 (우: ○○○○○)

1. 임대인 ○○○(○○○○○○○-○○○○○○○)는 2024. 3. 3. 10:00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와 귀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된 임대목적물도 파산재단으로서 본 관재인에게 관리 및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본 관재인은 임대인 ○○○의 파산선고에 따라 임대인 ○○○와 귀하 사이에 체결된 아래 표시의 임대차계약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임을 본 서면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파산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표시)

임차부분의 표시: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선고결정문 사본 | 1부 |
| 1. 관재인선임증 사본 | 1부 |

20

위 발신인 임대인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서식 20] 소제기 허가신청서

법 원 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우: ○○○○○)
 [전화: 02-○○○○-0725, 팩스: 02-○○○○-1811]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22.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제 목 : 소제기 허가신청

1. 채무자는 ○○시 ○○군 ○○면 ○○리 소재 (주)○○○ “동양 휴양콘도미니엄” 20.07평형을 입회 이용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서를 체결하고 입회금 10,300,000원을 (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위 입회금 역시 파산재단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본 관재인은 2024. 5. 26. (주)○○○에 첨부와 같은 입회금반환요청서를 보내고 입회금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내에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늘까지 (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 관재인이 (주)○○○에 유선상으로 요청을 하고자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연결음이 날뿐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유선상으로 독촉은 불가하였습니다.
3. 이에 본 관재인은 (주)○○○에 대해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입회금반환요청서 사본 | 1부 |
| 1. 소포우편(택배)조회서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3호

제 목 : 소제기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서울화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서식 21]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법 원 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가 ○○ ○○빌딩 ○층 (우: ○○○○○)
[전화: 02-○○○○-0725, 팩스: 02-○○○○-1811]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27.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제 목 :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1.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여 파산재단으로 편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였던 (주)○○○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자 ○○은행에 금 90,469,178원을 변제한 바 있습니다.
2. 본 관재인은 (주)○○○에 공문을 보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구상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3. 이에 본 관재인은 (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주)○○○에서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려고 신용조회사인 △△(주)에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신용조회 결과 (주)○○○ 명의의 재산으로는 자동차 1대가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 대표이사 ○○○은 본 관재인에게 현재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구상금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으나, 3,0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해준다면 석달에 걸쳐서 매달 1,000만 원씩 상환할 수는 있다고 하며, 아니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관재인이 판단하기로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진행할 경우 승소가 확실하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뿐이고 파산재단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비록 (주)○○○의 대표이사 ○○○이 제안한 금액이 구상금청구 대상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회수가능성 측면에서는 (주)○○○의 대표이사 ○○○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0만 원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본 관재인은 (주)○○○의 대표이사 ○○○과의

합의에 대해 귀원의 허가를 구하고자 이와 같이 허가신청을 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신용정보 조사회보서 | 1부 |
| 1. 화해계약서(초안)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화해계약서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을은 본 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이를 충분히 존중하며 계약에 임한다.

제2조

- ① 을은 갑에게 매달 30일 1,0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총 3,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을에 대한 구상금청구 등 일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 ② 을이 잔금기일을 어기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몰취하며, 을에 대한 구상금청구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청구를 인낙하기로 한다.

제3조

- ① 이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갑은 계약체결 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이다.
- ③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 . .

갑: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인)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

을: ○○○(○○○○○○○-○○○○○○○) (인)
○○시 ○○읍 ○○리 ○○○번지 ○○빌라 ○동 ○○○호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3호

제 목 : 화해계약허가신청서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서울화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서식 22]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청 구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상 대 방 이○○ 외3

소송물가액 금 〇〇,〇〇〇,〇〇〇원

인 지 대 금 1,000원

송 달 료 금 30,200원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귀중

부인의 청구

청구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동)
전화: ○○○-○○○○, 팩스: ○○○-○○○○

상대방 1. 이 ○ ○
○○시 ○○구 ○○로 ○○○, 202호(○○동,○○빌딩)
2. 김 ○ ○
○○시 ○○구 ○○로 ○, ○동 ○호(○동,○아파트)
3. 유 ○ ○
○○시 ○○구 ○○로 ○, ○동 ○호(○동,○아파트)
4. 최 ○ ○
경기 ○○시 ○○구 ○○로 ○○

부인의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에게,
가. 상대방 이○○, 김○○, 유○○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타경○○○ 경매절차에서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상대방 최○○은 별지 목록 2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2. 29. 접수 제○○○○호로 각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일지매(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는 주식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귀원 2024하단1, 2024하면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귀원은 2024. 00. 00. 11:00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 (1) 채무자는 2007년부터 〇〇건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〇〇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1월경 이남〇의 소개로 ‘주식회사 에그’라는 벤처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마련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식을 인수(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식회사 에그의 발행 주식 2,463,790주의 주식 중 약 23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022. 9. 7.	200,000,000원
1. 2022. 9. 7.	40,000,000원
1. 2022. 8. 4.	20,000,000원
1. 2022. 7. 6.	60,000,000원
1. 2022. 5. 18.	30,000,000원
1. 2022. 5. 28.	50,000,000원
1. 2022. 1. 26.	40,000,000원
	440,000,000원

- (2)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내용은, 닭에게 항체를 주사하여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에그는 사업 초기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가 꾸준히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그는 2022년도에는 A.B.네트워크라 불리는 다단계 회사와 손을 잡고 판매의 대부분을 다단계 판매회사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A.B.네트워크의 주〇〇 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그는 3개월치 판매대금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이 어려워져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그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 (3)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식투자 및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이〇〇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210,000,000원 2022. 6. 17.
1. 상대방 김〇〇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3,000,000원 2022. 5. 15.

1. 상대방 유○○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0,000,000원 2022. 3. 7.

1. 상대방 최○○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150,000,000원 2022. 1. 22.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투자한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는 다액의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 2023년 8월경 근무하고 있던 ○○건설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 채무자가 ○○건설에서 퇴사한 직후, 상대방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상대방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i) 상대방 이○○ - 별지 목록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23. 9. 26. 접수 제43814호(등기원인 2023. 9.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ii) 상대방 김○○ - 별지 목록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24. 접수 제13820호(2023. 8. 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iii) 상대방 유○○ - 별지 목록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26. 접수 제14359호(2023. 8.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iv) 상대방 최○○ - 별지 목록기재 2번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29. 접수 제81889호(등기원인 2023. 12.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3. 부인권 행사

가. 법률의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제1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인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행위는 상대방들에 대하여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 부인권 행사 요건 해당성

- (1)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2023. 9. 26., 2023. 12. 29., 2023. 8. 24., 2023. 8. 26.로서 채무자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채무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 및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상대방들에게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2)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신청서상으로 자신의 지급불능시점을 ○○건설을 퇴사한 시점인 2023년 8월로 밝히고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으로 파산신청할 무렵의 총 채무액을 2,197,966,092 원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3) 나아가 상대방들 역시 채무자가 ○○건설을 퇴사하자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염려하여,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변제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인권 행사 방식

따라서 상대방들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인의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위 경매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이○○, 김○○, 유○○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인의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2023. 9. 26.자(상대방 이○○), 2023. 8. 24.자(상대방 김○○), 2023. 8. 26.자(상대방 유○○)]을 부인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위 채무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식(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으로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명 방법

1. 소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20000타경00000)
1. 소갑 제2호증	진술서
1. 소갑 제3호증	채권자 목록
1. 소갑 제4호증	재산목록
1. 소갑 제5호증	현재의 생활상황
1. 소갑 제6호증의 1	파산신청사유서
1. 소갑 제6호증의 2~4	각 주식보관증
1. 소갑 제6호증의 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채무잔액확인서(서울보증)
1. 소갑 제7호증의 2	채무잔액확인서(신용보증기금)
1. 소갑 제7호증의 3	부채확인서(현대캐피탈)
1. 소갑 제7호증의 4	부채잔액증명서(한국씨티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5	부채증명서(국민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6	부채증명서(농협)
1. 소갑 제8호증	파산선고결정
1. 소갑 제9호증의 1	보정서
1. 소갑 제9호증의 2	진술서(채무자)
1. 소갑 제10호증의 1~5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 . . .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회생법원 제000 파산단독 귀중

5.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0 00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 428㎡ 1층 280.79㎡ 2층 279.39㎡

4층 259.21㎡ 5층 187.45㎡ 옥탑1 16.84㎡

옥탑2 18.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1000-0 대 53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2층 제201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0.4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538.5분의 59.64

2. 충남 00시 00면 00리 00-0 대 1037㎡

3. 충남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848㎡ 중 2분의 1

(채무자 일지매 지분 전부)

4. 충남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2252㎡ 중 2분의 1

(채무자 일지매 지분 전부)

5. 충남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3049㎡ 중 2분의 1

(채무자 일지매 지분 전부) -끝-

[서식 23]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법 원 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동 ○○○ ○○빌딩 ○층
 전화 02) ○○○-○○○○, 팩스 02-○○○-○○○○

사 건 : 2024하단 ○○○○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3호
 발 송 일 자 : 2024. 6. 27.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제 목 :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 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 명의의 상속지분에 대한 환가를 조만간 완료하여 금 ○○○○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통장사본 1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4] 이의통지서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이의통지서

사 건 2024하단○○○○ 파산선고
채 무 자 일 지 매
파 산 관 재 인 변호사 홍길동
파산채권신고인 ○○○(소관 : ○○여신관리단)
 ○○시 ○○구 ○○가 ○○번지
 회장 ○○○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2. 11.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다만, 채무자와 파산채권 신고인 사이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확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 음 -

1. 이의자 :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 이의있는 채권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 종류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비고
				우선 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1	○○○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	채권자는 대여금 원리금 전액을 일반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금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 시인하고, 이자채권 5,580,754원은 파산선고 후 이자를 기산한 것으로 일반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후순위채권으로 시인함.

20 . . .

판사 ○ ○ ○

[서식 25] 파산채권 시·부인표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사건 번호 2024하단○○○○ 파산선고
채 무 자 일 지 매

파산채권 시·부인표

(제1회 채권자집회)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 목 록 ○

I. 파산채권 시부인 기준

II. 채권조사 시·부인표

1. 파산채권 시부인 기준

1. 공통사항

- 가. 신고채권 중 증빙자료 미비로 채무자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 나. 제출된 자료로 신고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 다.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 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신고채권은 이의함
- 마. 계약의 하자 또는 불공정이 인정되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 바. 이자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기준으로 함

2. 특정사항

가. 이자채권

- (1)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부분은 이의함
- (2) 사채의 이자채권의 경우 이표(또는 이권)에 의한 이자계산 방식에 의하여 이표약정에 따라 그 지급일까지의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이의함
- (3)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에는 이의함
- (4)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나. 변제기 미도래 채권

파산선고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에 의하여 파산선고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

II. 파산채권 시·부인표

○ 파산채권 시·부인 집계표

구분	건수	신고금액	시인액	이의액
파산채권	2	72,373,084	72,373,084	0

○ 파산채권인부표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 종류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비고
				우선 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1	○○○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대여금 이자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자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2	(주)○○ 은행	대여금	17,461,328		17,461,328	0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전액 시인함.
합 계			72,373,084		66,792,330	5,580,754		

[서식 26] 이의철회보고서

법 원 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동 ○○○ ○○빌딩 ○층
 전화 02) ○○○-○○○○, 팩스 02-○○○-○○○○

사 건 번 호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 - 04호

발 송 일 자 : 2024년 4월 27일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파산단독

제 목 : 이의철회보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주)○○은행(이하 '채권자'라 함)이 신고한 채권 금 247,141,551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회합니다.

- 아 래 -

1.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금액 전액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2024. 3. 12. 채무자에 대하여 금 247,141,551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2024. 3. 18.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증거 자료 미제출로(내부전산자료만 첨부) 전액 이의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증거자료 제출과 채권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는 2024. 4. 24. 파산관재인에게 신고채권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 및 추가 증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채권신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결 론
 채권자는 관재인이 이의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 관재인은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결국 채권시부인표는 별첨목록 [표 1]과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 | | |
|--------------------|----|
| 1. 파산채권 시·부인표(수정본) | 1부 |
| 1. 이의철회서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7] 이의철회서

이의철회서

사 건 2024하단○○○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 ○○○○○○○○)
 주소 : ○○시 ○○동 ○○○ ○○아파트 ○○호
 거소 : ○○시 ○○구 ○○동 ○○아파트 ○○호
 파 산 관 재 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채권신고인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구 ○○가 ○○
 대표이사 ○○(소관 : 지배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2024. 3. 18. 16: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채권자 (주) ○○은행이 신고한 채권을 전부 이의하였으나, 이의를 철회합니다.

- 아 래 -

1. 이의 철회자 :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 시인된 채권

신고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이의사유	비고
5	(주)○○은행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	247,141,551	247,141,551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으로 전액 시인함.
	합계		247,141,551	247,141,551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8] 특별기일 지정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〇〇〇-〇〇〇〇, 팩스 02-〇〇〇-〇〇〇〇

사 건 : 2024하단〇〇〇〇호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6. 4.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〇〇〇파산단독
제 목 : 특별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귀 법원의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 신고된 채권이 있으므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신고채권

신고 번호	채권신고인	주 소	채권종류	채권금액(원)
3	〇〇〇 (소관: 〇〇지사)	서울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빌딩 〇층	구상금	27,908,750

첨부서류 : 파산채권신고서 1부
채권조사 시·부인표 1부
출석현황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29] 재단포기허가신청서

법 원 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
 전화: 02) 500-1000 팩스: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호 파산선고
 문서번호 :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 2024. 6. 4.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파산단독
 제 목 :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가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환가 포기 품목

채무자 소유의 00시 00동 00 소재 건물의 1744.38분의 53.17지분

2. 환가포기 사유

가. 부동산의 현황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대지지분이 없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출입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으며, 승강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입구는 경사져있어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햇빛이 들지 않아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여러 곳에 피어 있고, 건축된 지 14년이 지나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000(000-000-0000, 00시 00구 00동 00)에 대한 지료가 연체되어 위 000과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2006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현재는 1층만 임대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뿐 2층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불경기로 인하여 인근 공장지대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건물 이용가치는 거의 소멸된 상태로써 환가를 위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채무자의 지료 연체

한편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인 ○○○(원고)이 2006. 8. 23.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지방법원 2000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들이 각자 밀린 임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까지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계속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의 소유권이전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관재인은 ○○지방법원의 조정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밀린 지료의 변제조로 토지소유자 ○○○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소유자인 ○○○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해 보았으나, ○○○은 굳이 가지 없는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유 및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고, 이시폐지를 신청하고자 재단포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5호

제 목 :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서식 30]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과 예납금 재단편입 신청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무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5〇〇-3〇〇〇, 팩스 02-5〇〇-8〇〇〇, 2024. 〇〇. 〇〇. 〇〇〇@hanmail.net 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채무자 이지매
파산〇〇〇단독	2024하면〇〇〇〇 면책	(111111-2222222)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파 산 선 고 시 자 산	
파 산 선 고 시 부 채	
수 집 재 단 액 수	
관 재 업 무 수 행 기 간	
파산채권자의 총수 및 총액	
실 제 배 당 룰	
재단채권자의 총수 및 총액	
소 송 수 행 내 역	
환 가 업 무 내 역	
선급보수 지급일자 및 액수	없음
기 타	
예납금 재단편입을 위한 임치품 보관통장 내역	
예 금 주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계 좌 번 호	〇〇은행 〇〇지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소 명 자 료	통장사본 1부 첨부

위 예납금재단편입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회생법원 제〇〇〇 파산단독
판사 〇〇〇 ㉠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법 원 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00빌딩 1층(우: 0000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 2024하단0000호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1호
 발 송 일 자 : 2024. 6. 1.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000파산단독
 제 목 :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현재 현금 등 고가품 보관 장소에 합계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재단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금 14,208,040원에 해당하는 임치금의 반환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관금의 내역
 파산관재인은 2024. 6. 1. 현재 채무자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 00주택 제에이동 제1층 제102호'에 대한 환가대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2. 변제대상 재단채권의 내역
 채무자는 2024. 6. 1. 현재 마포세무서 부가치세 미납금 6,856,730원, 국민건강보험 미납보험료 3,636,31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민세 미납금 6,170원 등 합계 금 10,499,21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재인은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로부터 금 10,499,2100원을 인출하여 각 재단채권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3.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

가. 은행명 :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

나. 계좌번호 : 214-○○○○○○○-○○○○○

다. 예금주 : 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첨부:	1. 채무조회표 사본	1부
	1. 사실증명(세금)	1부
	1. 미납내역서(건강보험료)	1부
	1. 고지서(주민세)	1부
	1. 통장사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서 번호 : 일지매 - 1호
제 목 :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서식 32] 재단채권승인·임치금반환허가·최후배당허가신청·배당공고·배당제외결정·계산보고집회 지정신청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무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5〇〇-3〇〇〇, 팩스 02-5〇〇-8〇〇〇, 〇〇〇@hanmail.net	2024. 〇〇. 〇〇. 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채무자 일지매
파산〇〇〇단독	2024하면〇〇〇〇 면책	(111111-2222222)

재단채권 승인 허가신청		
재단채권자	채권내용	채권액수(원)
재단채권 승인을 위한 소명자료 목록		
재단채권 변제를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신청		
반 환 사 유	재단채권 변제 예정	
예 금 주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계 좌 번 호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출 급 금 액	통장잔고 중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배당재원 산정을 위한 수지계산 (단위, 원)						
파산선고 당시 현금자산						
총수입액	파 산 재 단 의 환 가					
	법 원 예 납 금					
	배 당 기 일 까 지 의 예 상 이 자					
총지출액	절 차 비 용					
	관 재 인 보 수					
	그 밖 의 재 단 채 권					
합계(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						
최후배당표						
구분	순 번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	일반채권배당액		공탁 여부
				배당률(%)	배당지급액(원)	
일 반 채 권 시 인 액	1					
		이하 없음				
합계						
채권자의 주소						
순번	채권자	채권자의 주소				

	이하 없음	
최후배당 희망일정과 기일지정 신청		
최 후 배 당 허 가 등 신 청		
최후배당허가, 배당공고, 배당제외기간 결정		
배 당 제 외 기 간 종 료		
배 당 표 에 대 한 이 의 기 간 종 료		
배당액(배당율 포함) · 임치금반환 · 계좌해지 허가신청		
배 당 액 통 지 , 배 당 실 시		
파 산 채 권 자 표 에 배 당 실 시 기 재		
계 산 보 고 서 제 출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2024. . .

재단채권승인, 재단채권변제를 위한 임치금반환, 최후배당을 허가합니다.

20 . .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판사 ○○○ ㉠

[서식 33] 재단채권변제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동 ○○○ ○○빌딩 ○층
 전화 02) ○○○-○○○○, 전송 02-○○○-○○○○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2호
 발 송 일 자 : 2024. 3. 10.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제 목 : 재단채권변제보고서

-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입치금 13,149,189원 중 2024. 1. 27.부터 2024. 2. 2.까지 재단채권자 금천세무서, 수원세무서, 서울관악구청에 합계 금 12,443,519원을 변제한 사실을 2024. 2. 4. 보고하였고(문서번호 : 일지매-11호),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 705,670원을 2024. 3. 8. 아래와 같이 각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아 래 -

가. 금 705,670원의 재단채권의 변제내역

번호	재단채권자	금액	비율	지급할 금액	비고
1	○○세무서(소득세) (우리 ○○○○-○○○-○○○○)	59,964,470	0.56%	336,656	
2	○○세무서(법인세, 부가세) (우리 ○○○○-○○○-○○○)	60,170,340		337,812	
3	○○구청(세무2과) (우리 ○○○-○○○○-01-001)	5,557,750		31,202	
	합 계	125,692,560		705,670	

* 첨부서류 1. 입금증 각 3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4]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채 무 자 : 일지매

다음기일 : 2024. ○○. ○○.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페이지/계속/종결)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사건 번호 : 2024하단 ○○○○ 파산선고

채 무 자 : 일지매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제1회 채권자집회)

순번	채권자명	채권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출석현황				의결내용	
			우선	일반	후순위		본인	날인	대리인	날인	1안	2안
1	○○○○(주)	5,615,910		5,562,620	53,290							
2	(주)○○○○	34,526,724		34,526,724								
3	○○○	10,650,000		10,649,180	820							
4	○○○○(주)	9,592,641		9,592,641								
5	(주)○○○○	3,999,586		3,999,586								
합계		64,384,861		64,330,751	54,110							

[서식 35]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〇〇〇-〇〇〇〇, 전송 02) 〇〇〇-〇〇〇〇

사 건 :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 .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〇〇〇 파산단독
제 목 : 파산절차 실효 보고 및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절차가 실효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계산보고집회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귀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2024. . . 10:00 파산선고를 하였고, 관재인은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는 2024. .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2024개회〇〇〇〇〇)를 제출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4.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 공고문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는 실효되었으나,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원에 계산보고집회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및 공고문 | 1부 |
| 2. 사건검색표 | 1부 |
| 3. 수지계산서 | 1부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 촉탁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〇〇〇-〇〇〇〇, 전송 02) 〇〇〇-〇〇〇〇

사 건 :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 .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〇〇〇 파산단독
제 목 :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문서번호: 일지매-5호)를 얻어 매각완료하였으므로(또는 파산폐지가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기입등기말소촉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부동산등기부등본 | 1부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선고말소촉탁등기 대상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철근콘크리트조 평 스투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230.28㎡

2층 230.67㎡

3층 184.36㎡

지층 226.04㎡

옥탑 26.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73-71 대 44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비04호 철근콘크리트조 54.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47.6분의 35.51 끝.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구 ○○동 ○○○ ○○빌딩 ○층
전화 02) ○○○-○○○○, 전송 02) ○○○-○○○○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문 서 번 호 : 일지매 - 1호
발 송 일 자 : 2024. . .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 파산단독
제 목 :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채무자의 2024. . . 동의폐지신청은 채무자가 2인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한 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폐지신청에 대한 필요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 채무자의 동의폐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식 38] 최후배당 실시 및 배당률 통지

최후배당 실시 및 배당률 통지

사 건 : 2024하단○○○○ 파산선고

채 무 자 : 일지매

수 신 :

위 파산사건에 관하여 최후배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배당률: %
2. 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액: 원
3. 배당금 수령 일시: 2024. .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 배당금 수령 장소: 파산관재인 사무실(서울 서초구 ○○○동 ○○○○ ○○빌딩 ○층
지하철 2, 3호선 서울교대역 ○번 출구로 나오셔서 전화(02-○○○○-○○○○) 요망
5. 주의할 점
 - 가. 우편으로 채권수령영수증을 보내시는 경우
 1. 채권수령 영수증, 2. 송금의뢰서, 3. 채권증서(어음, 수표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원본), 4. 인감증명서를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 나. 직접 방문하실 경우
 1. 채권수령 영수증, 2. 채권증서(어음, 수표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원본), 3. 신분증, 4. 인감도장(채권신고서 또는 채권신고 위임장의 인감과 동일한 것) 5.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위 일시에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오시면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체영수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다. 우송 또는 지참하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전화: 02-○○○○-○○○○, 팩스: 0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식 39] 임치금반환 · 계좌해지 허가신청

법 원 용

재판장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무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전화 02) 5〇〇-3〇〇〇, 팩스 02-5〇〇-8〇〇〇, 2024. 〇〇. 〇〇. 〇〇〇@hanmail.net 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채무자 이지매
파산〇〇〇단독	2024하면〇〇〇〇 면책	(111111-2222222)

최후배당표						
구분	순 번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	일반채권배당액		배당지급액(원)
				배당률(%)	배당금액(원)	
일반 채권 시인 액						
		이하 없음				
합계						
임치금 반환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반환 및 해지사유			최후배당의 실시 및 파산절차 종료 예정			
예금주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은행 ○○지점 (○○-○○-○○○○○○)			
출급금액			통장잔고 전액 ○○○,○○○,○○○원 및 추가로 발생할 이자 포함			
위 각 허가신청에 관한 소명자료 목록						
통장사본 1통 첨부						

20 . . .

서울회생법원 제〇〇〇 파산단독
판사 〇〇〇 ㉠

[서식 40] 채권수령영수증

채권 수령 영수증

금 원정(W)

위 돈을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 파산선고 사건의 채권으로 영수합니다.

영수인 파산채권자 성명 : (인)
주소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귀하

송 금 의 퇴 서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 파산선고 사건의 최후배당금을 다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파산채권자 성명 : (인)
주소 :

첨부 : 인감증명서(영수증 및 송금의뢰서용)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귀하

[서식 41] 배당실시보고 · 통장해지보고 ·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이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사무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빌딩 〇층	2024. 〇〇. 〇〇.
	전화 02) 5〇〇-3〇〇〇, 팩스 02-5〇〇-8〇〇〇,	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①
	〇〇〇@hanmail.net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〇〇〇〇 파산선고	채무자 이지매
파산〇〇〇단독	2024하면〇〇〇〇 면책	(111111-2222222)

배당표에 따라 최후배당을 실시하고 임치금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최후배당표							
구분	순 번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	일반채권배당액		배당지급액 (원)	비고
				배당률(%)	배당금액(원)		
일반 채권 시인 액							
		이하 없음					
합계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단위, 원)							
파산선고 당시 현금자산							
총수입액	파 산 재 단 의 환 가						
	법 원 예 납 금						
	임 치 금 이 자						
총지출액	절 차 비 용						
	재단채권	관재인보수(재단운영비)					
		재 단 채 권 변 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잔 액							
소명자료 목록							
타행송금영수증 3통, 채권수령영수증 3통, 통장사본 1통 첨부.							

판 권
소 유

제4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2024년 7월 12일 인쇄
2024년 7월 22일 발행

편 저 서울회생법원
발 행 처 사법발전재단
인 쇄 한 양 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 3480-1309
팩 스 (02) 533-4074

※ 낙장·파본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ISBN 979-11-6086-106-8 93360

비매품